

# 『구미시 시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시민옴부즈맨을 구성,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시민옴부즈맨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시민옴부즈맨의 구성, 결격사유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 ~ 제9조)
- 시민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 ~ 제27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공무원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시민옴부즈맨을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접수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원 조사·처리로 시민에게 투명하고도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